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(서천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761

발의연월일: 2025. 1. 23.

발 의 자:서천호·박덕흠·김선교

이양수 · 조경태 · 이달희

박수영 • 정성국 • 서명옥

우재준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수산업협동조합(이하 "수협"이라 함)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 인원 요건을 두어 지구별수협의 조합원 수가 100인 미만인 경우를 조합 해산 사유로 정하고, 업종별수협으로 하여금 해당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되 그 수를 15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수산자원 감소 및 어촌 고령화 현상으로 인하여 어업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합원 수 미달에 따른 조합의 강제 해산은 어업환경을 악화시켜 신규 어업인의 유입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, 수산물가공수협은 조합 해산 사유로 조합원 수 7인 미만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업종별수협과 비교할 경우 형평성 측면에서도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업종별수협 해산 사유 중 조합원 수 요건을 15인 미만에서 7 인 미만으로 완화함으로써 조합의 지속적인 발전을 통한 어촌지역 활 성화에 기여하려고 하는 것임(안 제108조 후단).

법률 제 호

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08조 후단 중 "200인"을 "100인"으로, "15인"을 "7인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08조(준용규정) 업종별수협에	제108조(준용규정)
관하여는 제16조부터 제19조까	
지, 제21조, 제22조, 제22조의2,	
제22조의3, 제23조부터 제51조	
까지, 제51조의2, 제52조, 제53	
조, 제53조의2, 제53조의3, 제54	
조부터 제59조까지, 제60조제2	
항부터 제6항까지, 같은 조 제8	
항부터 제10항까지, 제60조의2,	
제60조의3, 제60조의4, 제61조	
제2항 및 제62조부터 제103조	
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 이 경	
우 제16조제1항 중 "조합원 자	
격을 가진 자 20인 이상"은	
"어업을 경영하는 어업인 20인	
이상"으로, 제47조제3항제1호	
중 "제60조제1항제3호 및 제4	
호"는 "제107조제1항제3호 및	
법률 제4820호 수산업협동조합	
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"로,	
제47조제3항제2호 중 "제60조	
제1항제8호부터 제13호까지 및	
제15호의 사업 중 같은 항 제3	

호ㆍ제4호"는 "제107조제1항제 6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13호 의 사업 중 같은 항 제3호 및 법률 제4820호 수산업협동조합 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"로, 제47조제4항제1호 중 "제60조 제1항제2호"는 "제107조제1항 제2호"로, 제47조제4항제2호 중 "제60조제1항제8호부터 제13호 까지 및 제15호의 사업 중 같 은 항 제2호"는 "제107조제1항 제6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13 호의 사업 중 같은 항 제2호" 로, 제60조제3항 중 "제1항제3 호"는 "법률 제4820호 수산업 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 부칙 제 5조"로, 제60조제4항 중 "제1항 제8호"는 "제107조제1항제6호" 로, 제60조제5항 중 "제1항제7 호 및 제8호"는 "제107조제1항 제6호"로, 제60조제8항제2호 중 "제1항제2호"는 "제107조제1항 제2호"로, 제60조의2제1항 중 "제60조제1항제4호"는 "제107 조제1항제3호"로, 제63조제1항 중 "제60조제1항제2호나목"은

"제107조제1항제2호나목"으로, 제84조제4호 중 "200인 미만"으로, 제102조은 "15인 미만"으로, 제102조중 "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등기부"는 "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등 합등기부"로 본다.

<u>100인</u>
<u>7인</u>